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1월 16일(수) 조간부터 사용하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15일(화) 12시]			
배포일	2019년 1월 14일(월) (총 12쪽)	담당부서 담당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병법 팀장 (043-880-5831) 이소연 대리 (043-880-5834)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세차할 수 있는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셀프세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입구 또는 출구 대부분이 보행자도로 통과하나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해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개소 중 17개소(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으나 이중 4개소(23.5%)에만 블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20개소 중 14개소(70.0%)는 시야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고장치는 20개소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한편 20개소 중 4개소(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1개소(5.0%)는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 제61조 제1항),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속도저감시설, 도로반사경, 차량출입 경고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4호, '18.5.29. 시행).

□ 셀프세차장 내부, 이동경로 안내표시·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해

셀프세차장은 내부 및 외부세차 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차량 이동·주차 등을 위한 안내표시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관련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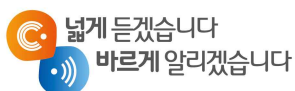
그러나 20개소 중 15개소(75.0%)는 화살표 등 차량 이동경로 안내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부 또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도 15개소(75.0%)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또한 20개소 중 13개소(65.0%)는 내부 세차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톱퍼(차량멈춤턱)를, 13개소(65.0%)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성 정보 제공 필요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접촉 및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가능하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일반현황

□ 개념 및 현황

- (개념) 세차장은 '기계식 자동세차장', '손 세차장', '셀프 세차장' 등으로 구분되며, 셀프 세차장은 세차기기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차량을 세차하는 곳임.
- (현황) '16년 기준 세차업 사업체 수는 7,368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7년 기준 셀프세차장은 약 1,350여 개소임¹⁾.

[연도별 자동차 세차업 현황]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사업체 수(개)	5,737	-	6,571	14.5%	7,368	12.1%
종사자 수(명)	11,147	-	12,578	12.8%	14,346	14.1%
매출액(백만원)	283,496	-	329,460	16.2%	450,934	36.9%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조사보고서

□ 구조

- 셀프세차장에는 차량 외부 및 내부를 세차하는 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셀프세차장 진입 후 구역별로 차량을 이동하여 세차를 하는 구조임.

[셀프세차장 구조]

구분	전경 사진	내용 및 설치 기기			
세차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투입 후 일정시간 내 차량외부를 세차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칸막이가 설치되어 개인별 세차가 가능함. ■ (세차순서) ①요금투입, ②고압건으로 예비세척, ③솔·분사기 등으로 거품세차, ④헹굼세차 · 코팅제 분사 또는 차량 하부세차 가능 			
					
차량 내부 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투입 후 일정시간 내 진공청소기와 에어컨 등으로 차량내부를 세차하는 공간임. 			
					

※ 셀프세차장별 구조 및 설치 기기 등 상이

1) K Car(前SK엔카지역),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세차 방식은 '셀프'(이뉴스투데이, 2017.8.19.)

2) 셀세모 홈페이지

□ 관련 규정

○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세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며, 일반주거지역, 일부 상업·공업 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함³⁾.
- 각 지자체별 관련 조례에 세차장 건축 관련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도로법」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⁴⁾.
- (점용허가대상 시설)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등⁵⁾
- (안전시설 설치)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⁶⁾.

【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4호 】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19.1.1. 시행)

- (관리범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범위가 기존 소비자용 제품에서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품 까지로 확대됨⁷⁾.
- (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안전기준 적합여부 표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⁸⁾.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0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용도지역별 건축 (불)가능 건축물 [별표]

4) 「도로법」 제61조

5) 「도로법시행령」 제55조

6)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4호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8.3.20.시행) 제2조 제16호 가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18.1.22.시행) 제2조 제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1.1.시행) 제3조 제3호·제4호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

조사개요 및 주요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개소
※ 경기 12개소, 서울 4개소, 인천 4개소(지역별 셀프세차장 수 고려하여 지역별 조사대상 수 선정⁹⁾)
- (조사기간) 2018.11.13. ~ 11.21.
- (조사내용) 셀프세차장 출입구 구조·안전시설, 내부 안전표시·시설, 세정제 안전성 정보 제공 실태 등

■ 주요결과

- (출입구 구조·안전시설) 셀프세차장 출입구는 대부분 보행자도로를 통과하고 있으나, 안전시설 설치 등이 미흡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단위 : 개소, (%)]

구분		조사결과	구분		조사결과
통과도로	보행자도로	17/20(85.0)	출구 시야확보	시야확보 불량	14/20(70.0)
	블라드X	13/17(76.5)		도로반사경X	14/14(100.0)
인접도로	어린이보호구역	4/20(20.0)	과속방지턱X		19/20(95.0)
	자전거도로	1/20(5.0)	출입 경보장치X		20/20(100.0)

- (내부 안전시설) 셀프세차장 내부는 차량 내·외부세차 구역 등 세차공간이 별도 설치되어 있어 사람 및 차량 통행 혼잡하나,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하고 셀프세차장 내 적용되는 안전 규정도 없어 개선이 필요함.

[단위 : 개소, (%)]

구분	외부세차구역	내부세차구역	구분	출입구	내부 이동로	
주차구획 표시	O	5/20(25.0)	이동경로 안내표시	O	11/20(55.0)	5/20(25.0)
	미흡	0/5(0.0)		미흡	4/11(36.4)	2/5(40.0)
	X	15/20(75.0)		X	9/20(45.0)	15/20(75.0)
스토퍼	X	16/20(80.0)	13/20(65.0)	안전 표지	7/20(35.0)	
미끄럼 방지	X	13/20(65.0)	해당사항 없음			
칸막이 가림막	미흡 설치	3/3(100.0)	해당사항 없음			

- (안전성 정보 제공)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정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었음.

[단위 : 개소, (%)]

구분	조사결과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성 표시	0/20(0.0)

9) 서울 84개소, 경기 489개소, 인천 82개소(네이버 지도검색, 2018.11.9. 기준)

□ 출입구 구조 및 블라드 설치

- (출입구) 조사대상 20개소 중 17개소(85.0%)는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음.
- (블라드) 출입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17개소 중 4개소(23.5%)에만 블라드(Bollard, 차량 진입억제 말뚝)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2개소(50.0%)는 블라드가 훼손되었거나 딱딱한 재질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었음.
- * 시선유도봉 등 블라드 이외의 안전시설 제외

[출입구 보행자도로 통과 및 블라드 설치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보행자도로 O		보행자도로 X	합계
	17(85.0)			
	블라드 O	블라드 X		
	4(23.5)	13(76.5)		

[보행자도로 통과 시 블라드 (미)설치 사례]



- (인접 도로) 조사대상 20개소 중 4개소(20.0%)는 입구 또는 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1개소(5.0%)는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였음.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보호가 필요한 구역으로, 차량 통행 속도 시속30km 이내로 제한함¹⁰⁾.

[출입구 인접 도로 종류]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어린이보호구역	4(20.0)	16(80.0)	20(100.0)
자전거도로	1(5.0)	19(95.0)	20(100.0)

10) 「도로교통법」 제12조

□ **시야확보**

- (시야확보 및 도로반사경) 조사대상 20개소 중 14개소(70.0%)의 출구는 주정차 차량, 벽면 등에 의해 시야확보가 불량하였으나, 도로반사경이 설치된 곳은 없었음.

【도로점용 허가 및 안전시설 설치】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속도저감시설, 도로반사경, 차량출입 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함¹⁾.

【시야 확보】 노외주차장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입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 범위의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²⁾.

[출구 시야확보 및 도로반사경 설치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시야확보 양호	시야확보 불량		합계
		도로반사경 O	도로반사경 X	
	6(30.0)	14(70.0)		20(100.0)
		0(0.0)	14(100.0)	

[출구 시야 (미)확보 사례]



□ **안전시설**

- (과속방지턱) 조사대상 20개소 중 1개소(5.0%)에만 출입구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음.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과속방지턱	1(5.0)	19(95.0)	20(100.0)

[과속방지턱 설치 사례]



- (차량출입 경보장치) 조사대상 20개소 중 차량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11) 「도로법」 제61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4호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이동경로 안내표시

- 조사대상 20개소의 이동경로 안내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위치별 표시 현황) 출입구는 11개소(55.0%)에 노면 또는 벽면에 화살표 등으로 안내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내부 이동로는 5개소(25.0%)에만 표시 되어 있었음.
 - (관리상태) 이동경로 안내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도 안내표시가 작거나 탈색되어 있는 등 잘 보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음.

[이동경로 안내표시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이동경로 안내표시 O		이동경로 안내표시 X	합계
출입구	11(55.0)		9(45.0)	20(100.0)
	양호	미흡		
	7(63.6)	4(36.4)		
내부 이동로	5(25.0)		15(75.0)	20(100.0)
	양호	미흡		
	3(60.0)	2(40.0)		

[위치별 이동경로 안내표시 (미)표시 사례]



□ 주차구획 표시

- 조사대상 20개소의 차량 내·외부세차 구역 내 주차구획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¹³⁾,
 - (외부 또는 내부세차) 15개소(75.0%)는 외부 또는 내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음.
 - (외부세차) 15개소(75.0%)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적절한 위치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고압세차를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음.

1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한다

- (내부세차) 17개소(85.0%)는 내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중 5개소(29.4%)는 탈색되거나 일부 구역에만 표시되어 있거나 개수대와 가깝게 표시되어 있는 등 표시상태가 불량하였음.
- 차량 내부세차 구역의 경우, 세차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 사람과 이동 차량 간 충돌 위험 등이 있어 주차구획 표시 등을 통해 안전 확보가 필요하였음.

[세차구역별 주차구획 표시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주차구획 표시 O		주차구획 표시 X	합계
외부세차 구역	5(25.0)		15(75.0)	20(100.0)
	양호	미흡		
	5(100.0)	0(0.0)		
내부세차 구역	17(85.0)		3(15.0)	20(100.0)
	양호	미흡		
	12(70.6)	5(29.4)		

※ 20개소 중 15개소(75.0%)는 외부 또는 내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 미표시

[세차구역별 주차구획 (미)표시 사례]

	주차구획 표시	주차구획 미표시
외부세차 구역		
	주차구획 표시 탈색	주차구획 미표시
내부세차 구역		

□ 차량 멈춤턱(Car stopper, 스토퍼)

- 차량과 사람 또는 시설물간 충돌 방지를 위한 차량 멈춤턱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소 중 7개소(35.0%)의 내부세차 구역에 설치되어 있었음.

[내부세차 구역 스토퍼 설치 여부]

[내부세차 구역 스토퍼 (미)설치 사례]

[단위 : 개소, (%)]

구분	스토퍼 O	스토퍼 X	합계
내부세차 구역	7(35.0)	13(65.0)	20(100.0)

스토퍼 설치	스토퍼 미설치
	

□ 칸막이 가림막 시설

- 외부세차 구역 칸막이가 보행자도로와 맞닿아 있는 3개소에는 칸막이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3개소 모두 일부에만 가림막이 설치되거나 칸막이 전면이 가려지지 않아 고압세차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음.

[칸막이 가림막 시설 설치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가림막 O	가림막 X	합계	
차량 외부세차 구역	3(100.0)	0(0.0)	3(100.0)	
	양호			미흡
	0(0.0)			3(100.0)

[칸막이 가림막 (미)설치 사례]



□ 미끄럼방지 시설

- 조사대상 20개소 중 7개소(35.0%)만 노면에 흙을 파거나 매트를 놓는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었음.

[외부세차 구역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미끄럼방지 시설	7(35.0)	13(65.0)	20(100.0)

[미끄럼방지 흙 설치 사례]



□ 안전표지

- (설치 여부) 조사대상 20개소 중 7개소(35.0%)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이동경로 안내표시 제외

[안전표지 설치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안전표지	13(65.0)	7(35.0)	20(100.0)

[유형별 안전표지 설치 사례]



□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성 표시

- 조사대상 20개소 중 셀프세차장 내 이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 표시를 한 곳은 전무했음.

[화학제품 안전성 표시]

[단위 : 개소, (%)]

구분	O	X	합계
화학제품 안전성 표시	0(0.0)	20(100.0)	20(100.0)

- 1개소는 KS* 및 ISO9001** 인증표시를 하고 있으나, 인증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 KS인증 :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 ISO9001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표준

□ 차량 진출입 시 주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유의한다.

- 차량 진출로는 담벼락이나 주정차 차량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한다.

□ 셀프세차장 내부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혼잡하므로, 세차 구역 이동 시 주의를 기울인다.

- 내부세차 구역으로 차량 이동 시 세차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 겨울철 미끄럼에 주의한다.

- 차량 외부 세차 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물(거품) 분사기 이용 시 차량 이외의 곳에 분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물이나 거품 분사기 등은 고압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이용 시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경우 보행자 등 차량 이외의 곳에 분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